



## 수신: 회원사 환경부서장

한 용출시험은 적절치 않음

⇒ 물질중의 중금속 분석방법은 함량시험과 용출시험이 있으며, 시멘트를 사용하는 구조물(건물, 다리 등)은 고형화되어 있어 인체 영향을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함량시험보다 용출시험이 적합하여 적용하는 것임. 이러한 방법은 폐기물분석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널리 활용되고 있음

③ 환경부는 그 동안 국산 시멘트 중금속 검출사실이 제기됐지만 '07.6 시멘트의 중금속 함량을 조사하고도 밝히지 않음

⇒ 환경부에서는 국내산 시멘트에 중금속 분석을 함에 있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06.9월 용출시험방법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 6가크롬이외의 중금속은 용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6가크롬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임

⇒ 금번 발표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멘트 및 철강슬래그 등 시멘트 부원료에 대한 중금속 함유 여부를 조사하여 국회에 제출한 자료임

### □ 조치계획

○ 환경부는 시멘트제품이 일상생활속에서는 유해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국민들이 시멘트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한 인식이 우려되는 바,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빠른 시일내에 안전성에 대한 정밀한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07. 10.18 관계기관 대책회의
- '07. 10. 22~26 전문가 등 합동조사단 구성
- '07. 11월 합동조사 추진

## 울산시 보도자료

### 2007 울산환경대상 시상계획 마련

울산시와 울산지방검찰청이 기업의 자율적 환경친화 경영체계 구축과 민간의 환경보전활동 장려를 위해 선정하는 '2007 울산환경대상' 시상계획이 확정됐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울산환경대상은 오는 31일까지 울산과 양산지역에 소재한 기업체, 민간 단체·개인 등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아 대상(기업체) 1개 업체, 우수상(기업체, 민간인) 2개 업체·단체(개인)를 선발한다.

신청서는 오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www.ulsan.go.kr/시정게시판/새소식)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환경경영(활동)보고서 또는 공적조서를 울산지검 환경보호위원회의 사무국(울산시 남구 옥동 635-5 환경보호위원회의 ☎228-4578)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1월 5일~12일 서류심사, 11월 14일~23일 현장확인, 11월 26일~28일 최종심사 등 3단계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6일 오후 4시 울산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울산환경대상 수상자에 선정되면 환경친화기업 선정 및 환경마일리지 가점 부여, 환경기술지원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신청시 우선 추천, 시상에 대한 언론홍보 및 환경홍보요원(민간개인)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한편 울산환경대상은 지난 2003년부터 울산시와 울산지방검찰청이 공동 주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공동 운영한다는 상징적 의미와 울산지역 환경보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끝. [환경정책과, 담당자 권기태 (☎ : 229-3124)]

## 환경법 질의.회신 사례

제 목	flare stack은 배출시설/방지시설의 항목중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요(등록일:2007.09.27 14:36:17)
민원내용	석유정제업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flare stack을 방지시설이라고도 하고, 배출



	시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석유정제업에서 사용하는 flare stack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시설/방지시설 명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처리결과	○ Flare Stack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라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kg이상일 경우 '폐가스소각시설'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별표 18의 규정에 적합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과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 제외), - 동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명은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에 해당됩니다. 끝.

## 보도자료

### 카프로 벤젠탱크 폭발 대피소동

증기 유출사고 회사측 숨기기 급급 안전불감증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화학제품 생산공장에서 벤젠 저장탱크가 찢어지면서 벤젠 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해당 업체가 사고를 은폐하는데 급급해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오전 10시께 울산시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공단 내 (주)카프로 공장에서 저장탱크(약 205㎡)에 벤젠을 채우는 과정에서 탱크 지붕 부분이 5꺽 가량 찢어지면서, 벤젠 증기가 대기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생산공정이 중단되고 큰 폭발 소리에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16일 오전 10시께 울산시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공단 내 (주)카프로 공장 내 벤젠 탱크가 폭발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업체는 사고 직후 이 사실을 관할 소방서나 노동지청 등에

신고조차 하지 않다 폭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시20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등 사고를 숨기기에 급급해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

이 회사 노조 관계자는 "정기보수를 위해 벤젠을 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탱크 내부 온도와 압력이 상승해 폭발했다"면서 "탱크를 냉각해 가면서 벤젠을 천천히 옮겼더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벤젠 탱크 내 증기압이 커지면서 탱크가 찢어졌으나 신속한 사후 처리로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탱크가 '폭발'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으며, '팽출(부풀어 나옴)'이 옳다"면서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카프로락탐과 유안비료 등을 생산하는 이 공장에서는 지난 7월에도 황산가스 유출사고가 발생, 회사와 노조가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두고 마찰을 빚은 바 있어 노동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청되고 있다.

울산노동지청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회사 측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경상일보 허광무기자 ajtws@ksilbo.co.kr ]

